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 10. 21 선고 2021가단1018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1. 9. 16.

판 결 선 고 2021. 10. 21.

주 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07. 9. 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17. 7. 27. 접수 제122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D 주식회사(이하 'D카드'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한 사람으로, D카드는 C에 대하여 카드사용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나. D카드는 2010. 11. 11. 주식회사 E에게, 주식회사 E은 2011. 12. 30. F 유한회사에, F 유한회사는 2013.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순차로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6. 22. '15,824,674원 및 그 중 7,823,972원에 대하여 2010.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2020차전287046,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20. 7. 24.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소유하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9.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17. 7. 27. 접수 제122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H, C, I, J이 있고, C의 법정상속분은 2/11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7. 7. 27.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이미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 1) C이 2017. 7. 27.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2) C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분인 2/11 지분을 포기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C의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된다.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을 야기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덕

별지

별 지 목 록	
[부동산의 표시]	
1. 토지	
충남 부여군	
대 554㎡	
- 이 상 -	

